2016년도 제2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16년 10월 27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김 민 호 부총재보

윤 면 식 부총재보 임 형 준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전 승 철 부총재보

장 민 조사국장 신 호 순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환 석 금융시장국장

서 봉 국 국제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

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승 헌 공보관

박 철 원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37호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6년 10월)(안)>

-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에 의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6년 10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보고서 작성시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관련부서는 「I.경제·금융동향」을 「I.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으로 변경하고 분량을 지난호 대비 약 50% 가량 축소하였고, 「II. 통화신용정책 운영」을 기준금리, 금융중개지원대출, 금융안정 순으로 변경하였고,「III.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의 세부목차를 대외여건, 성장전망, 물가전망, 주요 리스크 요인,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으로 재구성하였음.

또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향후 통화정책방향 결정시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국제유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선정하여 본문에서 서술함으로써「Ⅲ.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의 내용을 확충하였음.

이외에도 기조적 물가흐름에 대한 평가를 본문에 기술(記述)하였으며 기준금 리 결정시 위원 논의사항을 정리하여「II.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반영하였음.

이어 관련부서는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이번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지난호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의 분량은 여전히 많으므로 향후 작성시에는 평가 및 함의를 중심으로 더 간략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통화정책의 리스크 요인 분석이 추가되어 내용이 한층 보강되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는 향후 정책방 향에 대한 시그널이 더욱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하여 펀드 조성계획 발표 이전부터 금통위가 집행부로부터 정부와의 협의내용에 대해 수시로 보고받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내용을 수정·보완하고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일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향후 보고서 작성시 반영하겠다고 보고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금리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풍부 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함께 보다 신뢰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하면 좋 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본문의 한 문장에서 "구조조정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를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의결문, 의사록 및 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언급하며 의결문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내용이 잘 연계되어야 하고 의결문에 담기 어려운 상세한 정보는 가급적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제공하는 방향으로 보고서 체제를 개편함으로써 향후 통화신용정정책보고서가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3) 심의결과

수정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6년 10월)(생략)